

2016.11.30

'WTO 정보기술협정(ITA) 확대 발효' 안내

1. ITA 발효 취지

기술발전과 신제품 등장으로 기존 정보기술협정(ITA)를 보완하기 위해 '12년 5월부터 53개국이 협상을 시작하여 '15년 12월 제10차 WTO 각료회의를 계기로 **ITA 확대안이 최종 타결**되었으며,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간 정보기술 분야의 관세 장벽을 낮추어 무역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**반도체, 전자기기 및 영상기기 등 834개 정보기술 분야 제품**에 대하여 **'16년 12월 1일부터 관세를 점진적으로 철폐**합니다.

2. ITA란?

**** 정보기술협정(ITA, 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)**

ITA란 컴퓨터, 반도체 등 첨단산업 교역 자유화를 위해 정보기술 제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는 주요 국가들이 2000년까지 **교역을 완전 무관세화**하는 정보기술협정을 뜻합니다. ITA 품목은 주요 참가국의 **세계 시장 점유율이 90%이상**을 차지하여 금번 ITA 발효로 사실상 정보기술제품에 국경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.

2016.11.30

'WTO 정보기술협정(ITA) 확대 발효' 안내

3. ITA 대상 품목 및 관세 철폐

- ✓ ITA 확대 이행으로 관세가 인하되는 품목은 **반도체 제조장비**, **IT 소재**(디스플레이용 필름·접착제 등), **광학영상기기**(현미경·렌즈 등), **의료기기**(심전계·MRI 등) 등 **총 834개** (HSK 2016, 10단위 기준)
- ✓ 총 834개 품목 중 **381개 품목(45%)**은 '16년 12월 1일부터 **즉시 관세가 철폐**되며, **365개 품목(44%)**은 **3년**간, **기타 품목**은 **5년(5%)** 또는 **7년(6%)**간 단계적으로 관세 철폐
- ✓ 우리나라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매년 초에 단계별로 관세가 인하됨에 따라 **'17년 1월 1일부터 다시 관세가 인하**될 예정
- ✓ WTO 회원국에서 수입할 시 **일반 FTA와 달리** 원산지증명서 등 **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** WTO 양허 관세 적용 가능

2016.11.30

'WTO 정보기술협정(ITA) 확대 발효' 안내

4. ITA 발효에 따른 전망

- ✓ ITA 확대 이행으로 영상·통신 기기 및 부품 등 우리나라 수출 시장의 확대가 기대되며, IT 장비·소재 및 부품 등 수입품목 관세인하에 따라 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
- ✓ 헤드폰, MP3(음성재생기기) 등 일반 수입 소비제품들의 가격도 인하되어 소비자들의 후생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

5. 관련 링크

- ✓ '16년도 ITA 적용세율
(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일부개정령안(별표 1의 다)
<https://unipass.customs.go.kr/csp/framework/filedownload/kcs4gDownload.do?attchFileId=MYC-20161130-00026271409WK9Ee>

참고 1

ITA 확대 대상품목 철폐유형별 현황

□ 총 834개 품목 : 관세철폐 유형별 현황

구 분	주 요 품 목	(%)은 현재 적용되는 관세율
즉시철폐 (381개)	인쇄제판용 필름(6.5%), 잉크젯방식인쇄기(8%), 자동급지기(8%), 열식 복사기(8%), 반도체 제조용 사출성형기(8%), 장중단파 수신기(8%) OLED제조용 건식 식각기(5%), 반도체 디바이스 삽입·제거기계(8%) 음성재생용 레이저디스크(8%), 축음기용 레코드판(8%) 등	
3년 철폐 (365개)	인쇄용 잉크(6.5%), 전자식 저울(8%), 플라즈마 클리너 머신(8%), 화폐교환기(8%), LCD제조용 도포·현상기(8%), 음향증폭세트(8%), 헤드폰(8%), 음성녹음 재생기기(MP3) (8%), 프리즘(8%), 영사용스크린(8%), 현미경(8%), 초음파 영상진단기(8%), 컴퓨터 단층촬영기기(8%), 온도계(8%), 사진측량기기(8%) 등	
5년 철폐 (40개)	자기공명촬영기기(8%), 심전계(8%), 기타의료기기(8%), 뼈(골)밀도 측정기(8%), 면적계(8%), 초음파 어군탐지기(8%), 초음파 두께 측정기(8%) 등	
7년 철폐 (48개)	PC용 팬(8%), 정지형변환기(8%), 가청주파증폭기(8%), 무선원격조절기기(8%), 개폐기(8%), 위성방송 수신기기 부분품(8%) 적산용 계기(8%), 검정용 계기(8%) 등	

□ ITA확대협상 참여국 현황(53개국) * 이행국(44개국)

- 한국, 미국, 중국, EU(28) 대표부, 일본, 호주, 스위스, 리히텐슈타인, 캐나다, 노르웨이, 모리셔스, 뉴질랜드, 싱가포르, 대만, 태국, 말레이시아, 필리핀, 홍콩, 코스타리카, 이스라엘, 몬테네그로, 아이슬란드, 과테말라, 콜롬비아, 알바니아

참고 2 ITA 확대 대상품목 수입신고 요령

□ 관세율 구분부호 : CIT*

* 「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」 제2조 별표 1의 다

- (원칙) ITA 확대 대상품목은 관세율 “CIT”가 기본세율 및 WTO 일반양허세율(C*) 보다 낮은 경우에 한해 CIT 적용

* 「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」 제2조 별표1의 가

- HSK 10단위內 세부표기인 Bar(-) 별로 CIT 관세율이 2개 이상인 경우 신고인이 품명과 ITA 협정 양허내용을 확인 후 CIT 관세율 中 선택

[관세율 적용 사례]

품목번호	품명	관세율 구분부호	세율
HSK 9031.80-1000	초음파 어군탐지기	C	8.0%
	- 센서	CIT	6.0%
	- 기타		6.7%

* WTO 회원국에서 수입하는 경우 초음파 어군탐지기 센서는 CIT 6% , 기타는 CIT 6.7%